

1. 개정 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정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이 전자화됨에 따라 수사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을 수정·신설하는 등 형사절차 전자화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적용('25. 10. 10.) 이후에 개시된 사건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이하 해당 유형의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되고, 적용 이전에 개시된 사건은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이하 해당 유형의 사건을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됨에 따라 「해양경찰수사규칙」이 두 유형의 사건들은 모두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함.

- 1) 서류 등의 ‘편철’이 ‘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고 명시(안 제9조)
- 2) ‘전자기록사건’과 ‘종이기록사건’을 구분하고, 전자문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이기록사건’과 ‘전자문서’를 정의함 (안 제11조, 제22조)
- 3) 종이문서를 의미하는 ‘서면’이라는 문구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함께 적거나 양자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함 (안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40조·제55조·제78조·

제90조·제99조)

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전자적인 방식의 통지가 가능하도록 수사진행상황 등 통지 방법의 예시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통지 방법을 추가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통지를 종전 ‘서면’을 이용한 통지에 준하도록 함. (안 제11조·제20조·제99조·제115조)

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37조)

라. 전자기록사건에서 피조사자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확인 방법을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시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해시값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안 제44조, 별지 제34호의2 서식)

마. 「형사절차전자문서법」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집행 결과 작성, 반환 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을 신설함.

1) 전자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전자문서로 집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영장 등이 정상 출력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50조·제54조·제63조)

2) 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는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제63조)

3)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 그 사본, 수색증명서, 압수목록 교부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의2·제63조의2·제64조·제65조)

4)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은 발부 이후 영장 집행에 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므로 각 영장에 대응하는 ‘영장집행결과’ 서식을 신설하고 영장 집행 시 해당 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안 제55조·제63조·제73조, 별지 제49호의2에서 제49호의11까지의 서식)

바. 전자문서는 완성 이후 수정되거나 추가 기재할 수 없어 완성 후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현행범인 인수서의 서식을 분리하여 각각 긴급체포 피의자 구금서, 현행범인 구금서 서식을 신설하고, 신설된 서식의 작성 근거 규정 역시 신설함. (안 제51조·제52조, 별지 제37호의2·제41호의2 서식)

사.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가 아닌 전자화대상문서를 관리·유통하기 위해 ‘전자화대상문서목록’ 서식을 신설함. (안 제105조·제111조, 별지 제114호의2 서식)

아. 결정별로 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사건에서 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할 때 전자화대상문서는 이미 전자화되어 전자문서로 등사되었거나 등사할 수 없으므로 등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작성·편철됐는지”를 “작성·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로, “사본을”을 “통지서를”로, “적은 서면을”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 이외의 사건(이하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면을”을 “변호인 선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를 “등으로 접수된 사건이”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로, “사본을”을 “통지서(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으로 한다)를”로, “적은 서면을”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충 서면을”을 “보충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 제출·송달 및 보존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 “서면을”을 각각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서면”을 “제1항의 방식”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금”을 “하여금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로, “서명하게”를 “서명)을 하도록”으로 한다.

제40조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하나를”을 “1개 영상의 해시값을 피조사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종이기록사건의 경우”로, “받아”를 “받는다)”로, “하나와”를 “1개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해시값 확인은 해시값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영상녹화 목록에 따른다.

제50조의 제목 “(체포영장의 신청)”을 “(체포영장의 신청·재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55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 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장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 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의2서

식의 현행범인 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4조의 제목 “(구속영장의 신청)”을 “(구속영장의 신청·재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5조제2항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에 따른 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라 영장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력은 1회에 한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장집행 결과는 별지 제4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체포·구속영장 사본 교부 등) ① 수사준칙 제32조의2제1항

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는 제55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 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제55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 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영장을 복사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③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61조제2항 중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을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이기록사건은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62조제2항 중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을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이기록사건은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63조제2항 중 “집행”을 “재발급 신청, 집행”으로, “제55조제1항·제2항”을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라 영장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력은 1회에 한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영장집행 결과는 별지 제49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9서식까지에 따른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

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 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 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영장을 복사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경우 수사준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을 “경우”로,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이기록사건의 경우 압수목록 교부서는 서면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사준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색증명서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6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이기록사건의 경우 수색증명서는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7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 및 집행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한다. 이 경우 집행 결과는 별지 제49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78조제2항 중 “서면을 받”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으로, “요청 서면”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건기록 등본”을 “사건기록을 출력한 서면(종이기록사건의 경우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의 등본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서면으로 적어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로 한다.

제99조제2항 전단 중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며, 같

은 조 제5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로, “사본을”을 “통지서(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으로 한다)를”로, “적은 서면을”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10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2호서식,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제1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제112조제2항 중 “각 별책으”를 “별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의 경우 등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5조제3항 전단 중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49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제55조의2제1항 본문, 제63조제3항, 제6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입건전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상녹화 목록

1	파일명	
	MD5	
	SHA1	
	SHA256	
2	파일명	
	MD5	
	SHA1	
	SHA256	
3	파일명	
	MD5	
	SHA1	
	SHA256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체포영장 신청서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인치장소에 인치하고 구금장소에 구금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두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비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영장재발급 신청서

소속관서

제0000-000000호

0000.00.00.

수 신 : 법원의 장

발 신: 소속관서장

제 목 :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

신청인: 사법경찰관

(전자서명완료)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 5항에 따라 아래 영장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재발급의 허가를 구하는 대상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발 부 법 원	
	영 장 을 발 부 한 판 사	
	영 장 번 호	
	공 판 영 장 여 부	
	사 건 번 호	
	영 장 등 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의 출력자, 출력일시, 출력시스템에 관한 정보		
재발급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		

첨 부 :

긴 급 체 포 서

제 0000-00000 호

피	성	명	
체	주민등록번호		
포	직	업	
자	주	거	
변	호	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체포자의관직및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긴 급 체 포 피 의 자 구 금 서

제 0000-000000 호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 피의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구금함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210mm × 297mm(백상지 80g/㎡)

현행범인체포서

제 0000-00000 호

피 체 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체포한일시	
체포한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사유	
체포자의관직및성명	
인치한일시	
인치한장소	

210mm × 297mm(백상지 80g/㎡)

현행범인인수서

제 0000-00000 호

피 체 포 자 변 호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된 위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인 수 한 일 시		
인 수 한 장 소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210mm × 297mm(백상지 80g/㎡)

현행범인구금서

제 호

피 체 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형사소송법」 제212조 또는 제213조에 따라 ○○○○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인수한 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구금함.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210mm × 297mm(백상지 80g/㎡)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서(미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구속장소명에 구속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체포영장 집행 결과

【통상】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죄 명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국 적	
	주 거			

위 체포영장에 관한 집행 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체 포 일 시	20 . . . :	체 포 장 소	
인 치 일 시		인 치 장 소	
구 금 일 시		구 금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주: 1. 집행기관명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 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소속관서

구속영장 집행 결과

【체포된 피의자용】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국 적	
	주 거			

위 구속영장에 관한 집행 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구 금 일 시		구 금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주: 1. 집행기관명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 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소속관서

구속영장 집행 결과

【미체포 피의자용】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국 적	
	주 거			

위 구속영장에 관한 집행 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구 금 일 시		구 금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주: 1. 집행기관명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 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소속관서

구속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심문구인용】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국 적	
	주 거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하여 발부된 위 구속영장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유치희망장소			
경 유			

- 주: 1. 집행기관명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 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4. “유치희망장소”란에는 집행기관이 유치를 희망하는 장소를 참고적으로 기재할 수 있고, 해당 기재에 관한 전자 서명 또는 서명날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5. “경유”란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는 경우에 검사 경유 확인 여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속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일반용】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영장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 제시 ☐ 전송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주: 1. 집행기관명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 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소속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계좌 추적용】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영장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 제시 ☐ 전송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통 보 유 예	유 예 기 간		
	유 예 사 유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주: 1. 집행기관명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 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소속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몰수·추징 집행(일반용)】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영장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 제시 ☐ 전송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주: 1. 집행기관명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 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소속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몰수·추징 집행(금융계좌 추적용)】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영장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 제시 ☐ 전송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주: 1. 집행기관명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 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소속관서

감정유치장 집행 결과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죄 명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감정유치장에 관한 집행 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집 행 장 소			
유치한 일시	20 . . :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주: 1. 집행기관명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소속관서

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

발 부 법 원				
영 장 번 호		죄 명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위 감정처분허가장에 관한 집행 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집 행 방 법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집 행 일 시	20 . . : . .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처리자 성명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주: 1. 집행기관명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 수색 ·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일출 전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 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혐)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대 상 계 좌	계좌명의인	[] 피(혐)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 래 기 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 수 할 물 건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또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감정유치장 신청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려 하니 0000.00.00.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호인							
범죄사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유치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동시집행 필요성	
		신청 취지·사유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정인	성명						
	직업						
비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다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0000.00.00.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감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감정위촉연월일				
감정위촉사항				
감정장소				
범죄사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사유				
둘 이상의 허가장을 신청하는 취지와사유	수통 신청 여부		신청 영장 통수	
	신청 취지·사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변 호 인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전자화대상문서목록

[illegible]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 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u>작성· 편철</u> 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 ----- ----- ----- ----- <u>작성· 편철</u> (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 ② (생 략)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는 <u>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u> 등 고소인등이 요청 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 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u>서 면</u> 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 -- <u>서면·전화·팩스·전자우 편·문자메시지·전산정보처리 시스템</u>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하 같다) ----- <u>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u> ---- -----.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 을 <u>서면</u> 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④ ----- -- <u>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u>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신 설>

⑤ (생 략)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생 략)

② 제1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시스템으로 -----

-- 통지서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 이외의 사건(이하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변호

인 선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

--.

<삭 제>

<삭 제>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생 략)

②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공람 후 종결: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차. (생 략)

③ (생 략)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등으로 접수된 사건이 ---

가. ~ 차.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전산정보처리시스템 ---

-----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

③ -----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생략)

제22조(고소인·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는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생략)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통지서(종이기록 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으로 한다)를---
---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 하여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고소인·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충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 제출·송달 및 보존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에 따른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전화·팩스·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9조(조서와 진술서)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생략)

③ -----

-----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항의 방식-----
-----.

제39조(조서와 진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③ (현행과 같음)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④ -----
----- 하여금 전자서명
(종이문서의 경우 --- 서명)을
하도록 -----
-----.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

----- 서면 또는 전자문
서-----

-----.

제43조(영상녹화) ① -----

----- 전자서명(종이문서
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전자서명(종이문
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하여 그 중 하나를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한 후,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생략)

<신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

----- 1개
영상의 해시값을 피조사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종이기록사건의 경우 --- 받는다) -----
----- 1개와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해시값 확인은 해시값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영상녹화 목록에 따른다.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재발급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55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을 출력한

	<u>서면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 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장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다.</u>
제51조(긴급체포)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51조(긴급체포)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 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u>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현행범인 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u>
제54조(<u>구속영장의 신청</u>) (생략) <u><신 설></u>	제54조(<u>구속영장의 신청·재발급신청</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u>

제55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생략)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④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

한다.

제55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③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에 따른 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라 영장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력은 1회에 한

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장집행 결과는 별지 제4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제55조의2(체포·구속영장 사본 교부 등) ① 수사준칙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는 제55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 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제55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 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영장을 복사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
다.

②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
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
3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
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
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
는 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
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
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③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
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
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
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
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
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
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u>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후단 신설></u>	<u>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u>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통</u> <u>보</u>----- -----, <u>이 경우 종이기록사건은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u>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u>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후단 신설></u>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통보</u>----- ----- ---. <u>이 경우 종이기록사건은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u>
③ (생략) 제63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재발급 신청, 집행 ----- 제50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
-----.

③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라 영장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력은 1회에 한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및 제

<신 설>

4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영장 집행 결과는 별지 제49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9서식까지에 따른다.

제63조의2(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사본 교부 등)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 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 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영장을 복사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사준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

제64조(압수조서 등) ① (생략)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

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64조(압수조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경우 -----
-----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이기록사건의 경우 압수목록 교부서

③ (생략)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생략)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후단 신설>

<신설>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①·② (생략)

<신설>

는 서면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사준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수색증명서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이기록사건의 경우 수색증명서는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 및 집행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5조

<신 설>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서면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③ (생략)

④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과 함께 사건기록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⑤ (생략)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한다. 이 경우 집행 결과는 별지 제49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
----- 내용-----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건기록을 출력한 서면
(종이기록사건의 경우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의 등본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90조(소년에 대한 조사) ① 사
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그 소년
의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
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
을 상세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생
략)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
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
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
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
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8호서
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
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 ④ (생 략)

⑤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
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제90조(소년에 대한 조사) ①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서면 · 전
화 · 팩스 · 전자우편 · 문자메시
지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

----- 서면 또
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서면 또는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
----- 통지서(종이기록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⑥ ~ ⑧ (생 략)

제10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
서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르
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
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
라 편철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5.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11조(불송치 서류) ① 수사준
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
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다.

② 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에는 통지서 사본으로 한다)를-
---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
서는 별지 제112호서식,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 기
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 전
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114
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불송치 서류) ① 수사준
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 압
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
식,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
식,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

따라 편철한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③ (생략)

제112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사법경
찰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하고 송치 결정서, 불
송치 결정서 및 수사중지 결정
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서별로
압수물 총목록과 기록목록 등을
첨부한 후 각 별책으로 편철하
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치 및 송부한
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2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도 -----

--. 다만, 전자화대상문서의 경
우 등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면·전화·팩

<u>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u>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u>서면</u>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4호 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④ (생략)	<u>스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전산정보처리시스템</u> ----- ----- ----- -----, ----- <u>서면</u> <u>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u>----- ----- -----. ④ (현행과 같음)
---	---